

춘천지방법원 2022. 1. 19 선고 2021가단36895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전 문

원 고 대한민국

피 고 A

변 론 종 결 무변론

판 결 선 고 2022. 1. 19.

주 문

1.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보험에 관하여 2017. 9. 6. 체결된 보험계약자 및 보험수익자 명의변경 계약을 15,274,729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.
2. 피고는 원고에게 15,274,729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3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원인

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
2. 적용법조

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, 제257조 (무변론 판결)

판사 윤이나

별지